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7. . . (제 회)	

지 방 공 기 업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기업의 자율 경영체제 확립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 및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를 개선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 창출 경영 원칙 신설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지방 상·하수도 연체금 부과 규정, 조직변경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사업 범위에 ‘부동산 자산관리 사업’ 신설(안 제2조)

- 1) 지방공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하여 대규모 공공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공기업(LH공사)과 달리 지방 공사는 임대주택 등을 실제 운영·관리할 자산관리회사(AMC)를 겸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별도 AMC 설립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실정임.
- 2) 지방공사가 자산관리회사(AMC) 업무를 겸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여, 국가공기업(LH공사) 대비 차별사항을 시정하고 업무 위탁비용 절감, 신속한 의사결정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서민 주거 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회적 가치 창출 경영 원칙 신설 (안 제3조)

- 1)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원칙을 규정한 지자체 조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실현’ 지표 신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새정부 국정과제의 조기 이행을 도모하기 위함.
- 2) 지방공기업 경영원칙에 고객, 지역사회·주민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려한 경영활동 노력 조항을 신설함.

다. 지방상하수도 연체금 부과 규정 신설 (안 제22조)

- 1) 현행 「지방공기업법」 상 상하수도 사용요금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은 있으나,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금’ 부과·징수의 근거 규정은 없음
- 2) 요금 체납 시 연체금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연체금에 대하여도 지방세 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라. 임원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삭제(안 제60조)

- 1) 국가·지방공무원,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과 달리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 지방공사·공단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공공기관 간 형평성 제고, 지방공기업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원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규정을 삭제함.

마.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사업 신설(안 제65조의3)

- 1) 지방공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전문

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공공기관과 달리 타당성 검토 면제조항이 없고, 사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금액 기준의 일률적 적용으로 각종 비효율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2) 타법 상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 안전 직결 사업, 국가정책에 따라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사업 등 사업 특성·성격을 고려한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을 신설함

바. 공사와 공단 간 조직변경 절차 개선 (안 제80조)

- 1) 공사와 공단 간 조직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등기 신청 만기일 기산 등에 혼란이 발생함.
- 2) 지자체장의 종전 조직 폐지 조례안 및 변경된 조직 설립·운영 조례안의 의회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등기신청 만기일 기산시점을 종전 조직의 폐지 조례 및 변경 조직 설립·운영 조례 시행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주택사업(부동산 자산관리사업을 포함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의 고객, 지역사회 및 주민 등에 대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 요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6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65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타당성 검토 및 의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실시하였거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단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4. 2개 이상의 지방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어느 한 지방공사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받은 사업.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아니한 지방공사는 그 사업에 대하여 당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6.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7. 사업비 전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8.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전국적인 통일성·일관성에 따라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8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의 폐지 조례안 및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의 설립·운영 조례안을 함께 부의하여야 한다.

제80조제5항 중 “공단이 제2항에 따른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을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종전 조직의 폐지 조례 및 변경된 조직의 설립·운영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p> <p>1. ~ 6. (생략)</p> <p><u>7. 주택사업</u></p> <p>8. (생략)</p> <p>②·③ (생략)</p> <p>제3조(경영의 기본원칙)①·② (생략)</p> <p><u><신설></u></p> <p>제22조(요금)① ~ ③ (생략)</p> <p><u>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u></p>	<p>제2조(적용 범위)① ----- ----- ----- ----- ----- -----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주택사업(부동산 자산관리사업을 포함한다)</u></p> <p>8.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경영의 기본원칙)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지방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의 고객, 지역사회 및 주민 등에 대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려한 경영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22조(요금)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 요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u></p>

<신 설>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 5. (생략)

6. 삭제

②·③ (생략)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① (생략)

<신 설>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① -----

-----.

<삭제>

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타당성 검토 및 의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실시하였거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단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4. 2개 이상의 지방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어느 한 지방공사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받은 사업.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아니한 지방공사는 그 사업에 대하여 당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6.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7. 사업비 전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8.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전국적인 통일성·일관성에 따라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①
(생략)

②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④ (생략)

⑤ 공사 또는 공단이 제2항에 따른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①
(현행과 같음)

②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의 폐지 조례안 및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의 설립·운영 조례안을 함께 부의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종전 조직의 폐지 조례 및 변경된 조직의 설립·운영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

----.

⑥·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기업정책과	
연 락 처	02-2100-3570